

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(제27조제4항 관련)

1.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기준

가. 경고등은 운전자가 낮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, 다른 경고등과 구별되어야 하며, 별표 2의 안전띠자동표시기 식별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나. 경고음은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음향·음성 또는 주기적인 음향·음성이어야 한다. 이 경우 음성 경고는 한국어를 사용하여 한다.

2.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작동기준

가. 1단계 경고

자동차 정지상태에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시동장치 열쇠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경우에 4초 이상 경고등이 작동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경고음도 추가 작동하게 할 수 있다.

나. 2단계 경고

자동차가 정상 주행상태(시속 10킬로미터 이상으로 전방주행 중인 상태)에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기 전에 경고등 및 경고음이 작동하기 시작하여야 한다. 이 때 경고등 및 경고음은 30초(주기적인 경고 사이의 간격이 3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동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) 이상 작동하여야 한다.

1) 자동차 주행거리 : 500미터

2) 자동차의 속도 : 시속 25킬로미터

3) 자동차 주행시간 : 60초